국민연금 제도의 건실한 발전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의 출범 이후 계속해서 연금기금의 고갈 문제가 대두되었고, 자영자에 대한 확대 이후에는 근로자와 자영자간 공평의 문제와 보험료의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의 안티국민연금 사태는 강제적인 징수와 체납처분, 두개의 연금수급권을 가졌을 때에 병급을 제한하는 데에 따른 반발 등 제도의 집행과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의 용이성을 위해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설계되어 도입되었고 순차적으로 보험료수준과 급여수준을 조정할 것을 정부는 예상하고 있었다. 1988년 3%의 보험료와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하여 현재는 9%의 보험료와 60%의 소득대체율로 조정되었고

최근에 정부는 보험료를 장기적으로는 15.8%, 급여수준은 50%까지 내리는 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연금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하고 부담을 증대시키는 제도개선에 국민들의 제도불신은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는 안티국민연금이라는 형태로 조직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과연 현 제도를 보험료조정과 급여조정으로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였으나 재정안정화와 국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부과체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각지대의 상존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가 어렵고 공적자료가 없는 대상은 실제 보험료를 징수하기 어려워 사각지대로 남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현 제도를 재정안정화만 시키면 제도의 안정화가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도 수그러들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

1988년 3%의 보험료와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하여
현재는 9%의 보험료와
60%의 소득대체율로 조정되었고
최근에 정부는 보험료를 장기적으로는 15.8%,
급여수준은 50%까지 내리는 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은 현재의 제도틀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하기 힘든 제약요인들이 많다면 어떤 대안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학계, 연구원의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미래의 소득보장 제도의 근간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